

규정 직원인사위원회규정

문서번호	TWP-B217			
제정일자	2012. 02. 29.			
개정일자	2017. 03. 29.			
개정번호 1	페이지 1/4			

목 차

제1조(목적)

제2조(구성)

제3조(임기)

제4조(위원장)

제5조(위원회 소집 및 의결)

제6조(위원회의 기능)

제7조(회의록)

제8조(비밀보장)

제9조(운영세칙)

부칙

작성부	부서	서무과		제정일자	2012. 02.	2012. 02. 29.	
구 분	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					승 인	
직 책	과장	기획예산처장	<u>L</u>			총 장	
서 명							
일 자							



규정

문서번호 TWP-B217 제정일자 2012. 02. 29. 개정일자 2017. 03. 29. 개정번호 1 페이지 2/4

직원인사위원회규정

개정이력			
개정 번호	개정일자	개정내용	
0	2012. 02. 29.	- 직원인사위원회규정 제정	
1	2017. 03. 29.	- 직원인사위원회 위원장 변경	



규정

문서번호 TWP-B217 제정일자 2012. 02. 29. 개정일자 2017. 03. 29.

페이지

3/4

개정번호 1

직원인사위원회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7조 제2항에 의거 직원인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직원인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한다.<개정 2017.3.1.>
- ③ 간사는 사무처 서무과 직원으로 한다.

제3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회무를 총괄한다.

-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위원회 소집 및 의결) ① 위원회 소집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

- 1.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
- 2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- 3. 위원의 2/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
-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/3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정규직원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
- 2. 직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
- 3. 직원의 서훈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7조(회의록) ①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.

제8조(비밀보장)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, 위원은 협의에 관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.

제9조(운영세칙) 위원회는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세칙을 정할 수 있다.



규정문서번호TWP-B217제정일자2012. 02. 29.기정일자2017. 03. 29.개정번호1 페이지4/4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2. (경과규정)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적용한다.